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
----------	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3월 30일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로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 및 보완 함.

2. 수정내용

-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-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.
- 안 제5조제1항 중 “제7조의” 를 “제6조의” 로 한다.
- 안 제6조를 삭제한다.
- 안 제7조 내지 제12조를 안 제6조 내지 제11조로 한다.
- 부칙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칙 안 제2조를 삭제 한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.
-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.
- 안 제5조제1항 중 “제7조의” 를 “제6조의” 로 한다.
- 안 제6조를 삭제한다.
- 안 제7조 내지 제12조를 안 제6조 내지 제11조로 한다.
- 부칙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칙 안 제2조를 삭제 한다.

수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)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생활임금”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,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.</p> <p>2. “출자·출연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(이하 “서대문구”라 한다)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.</p> <p>3. “<u>하수급인</u>”이란 <u>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,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p>1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 삭 제 ></u></p>
<p>제3조(적용대상)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대문구 소속 근로자와 서대문구 출자·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.</p> <p>1.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</p> <p>2.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</p> <p>③ <u>서대문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,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권고한다.</u></p>	<p>제3조(적용대상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 삭 제 ></u></p>

수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)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생활임금의 결정)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생활임금은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,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, 물가수준,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</p> <p>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생활임금의 결정) ①----- 제6조의 ----- -----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6조(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)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삭 제 ></p>
<p>제7조(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·구성 등)</p> <p>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6조(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·구성 등)</p> <p>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

수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)

제 정 안	수 정 안
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%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.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.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.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주민 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	<p>③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8조(위원의 임기)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7조(위원의 임기)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9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	<p>제8조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제정안과 같음) 2. (제정안과 같음)
<p>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 (제정안과 같음)</p>

수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(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)

제 정 안	수 정 안
<p>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.</p> <p>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⑦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,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	<p>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⑤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⑥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⑦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<u>제11조(위원의 수당 등)</u>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u>제10조(위원의 수당 등)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<u>제12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u>제11조(시행규칙)</u> ----- -----</p>
<p>부 칙</p>	<p>부 칙</p>
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
<p><u>제2조(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)</u> <u>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	<p>< 삭 제 ></p>